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12월 7일

제06-40호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양 평 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3460-1121)

구 은 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eakoo@kiep.go.kr, Tel; 3460-1145)

주요 내용

- 2006년 12월 11일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으로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야 하는 시점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있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합의보다 앞당겨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으며, 무역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상품분야 개방에서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유통, 물류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양허계획에 따라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국의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균형 발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조화, 시장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의 시장개방에 맞추어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1. 서 언

- 2006년 12월 11일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으로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야 하는 시점임.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특히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
 - ※ 실제로 2006년 1~10월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1.7%(2005년 24.4% 증가) 증가한 데 그쳤으며, 대중국 투자(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도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가. 상품시장 개방

1) 무역업 개방

- 2004년 7월 중국정부가 무역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에게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국내 무역기업 설립이 가속화됨.
 - ※ 관련 법규: 대외무역법(2004년 7월 시행),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방법(2004년 7월 시행)
- 이에 따라 2001년 말 현재 3.5만 개에 불과하였던 무역기업이 2005년 말에는 18만여 개로 대폭 증가함(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만 5,750개, 2만 6천여 개 무역기업이 신설됨).

2) 관세인하 초과 달성

- WTO 가입후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2006년 1월에는 평균관세율을 9.9%로, 공산품 관세

율은 9.0%, 농산물 관세율은 15.3%로 인하하는 등 관세인하 약속보다 초과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였음(표 1 참고).

- 2005년 1월에는 256개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월 현재 화학제품의 평균관세율을 6.9%로 인하함(2003년 4월 중국의 ITA 협정 참가가 승인됨).
- 2006년 7월 1일에는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2001년 80~100%)와 10%로 인하함으로써 WTO 가입 양해각서에 따른 관세인하를 완료함.

표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계획과 실적

(단위: %)

| 연 도 | 전 품목 | | 공산품 | | 농산물 | |
|------|------|------|------|------|------|------|
| | 양허세율 | 실 적 | 양허세율 | 실 적 | 양허세율 | 실 적 |
| 가입 전 | 15.6 | | 14.3 | | 23.2 | |
| 2002 | 12.5 | 12.0 | 11.5 | 11.4 | 18.7 | 18.1 |
| 2003 | 11.4 | 11.0 | 10.5 | 10.3 | 17.5 | 16.8 |
| 2004 | 10.6 | 10.4 | 9.7 | 9.5 | 15.8 | 15.6 |
| 2005 | 10.1 | 9.9 | 9.2 | 9.0 | 15.5 | 15.3 |
| 2006 | 10.1 | 9.9 | 9.2 | 9.0 | 15.5 | 15.2 |
| 2010 | 10.0 | - | 8.9 | - | 15.1 | - |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 200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하고, 2006년에는 식물유 수입쿼터 및 국영무역 관리를 취소하는 등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감시화학품, 독성화학품, 오존층소모물질로 국한됨.

※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동시에 신규도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완성차 특징 인증제도, 관세분류 등에 있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정책(2004년 6월 1일 발표)」과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 방법(2005년 4월 1일 시행)」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부품관세율(10%)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25%)을 적용하고 있음.¹⁾

1) 이에 대해 자동차부품에 대해 현지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s)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TRIMs 협정 및 내국민대우(GATT 제3조)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음.

※ △ Knock Down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 특정 조립부품(차체, 엔진 등)을 조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부품의 CIF 가격 합계가 완성차 총액의 60% 이상인 경우(이 경우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중국은 해관총서 산하의 각 지방에 42개 관할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관할구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자의적으로 서로 다른 관세코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나. 서비스시장 개방

1) 소매유통시장 개방

- 소매유통분야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지역제한, 수량제한, 외국인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는 등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개방 내용: △ 외자 단독투자의 상업기업 설립 및 개인 상업기업 설립 허용 △ 등록자본금에 대한 제한 완화 △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단 대중매체와 농산물 유통업에 대해서는 지분제한) △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요건 완화 △ 지역제한 철폐(도매업의 경우 2004년 6월 1일부터, 소매업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점포 설립 시 지역제한 폐지) 등임.

- 또한 2006년 3월부터 일정 점포규모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상업분야 외국인투자 관리방법」(2004년 4월 발표), 「지방부문으로의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심사 인가 위양에 관한 통지」(2005년 12월 9일 발표)

-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소매유통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함.

- 2005년 한 해 동안에 새로이 허가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1,027개로 1992~2004년 설립한 기업 수(314개)의 3배를 넘어섰으며, 1,660개 점포가 신설되었음. 특히 2005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중 625개 기업이 단독투자형태로 진출하였음.

2) 은행 개방

- 2006년 12월 11일부터 외국계 은행에 중국 개인에 대한 위안화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은행업 개방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²⁾

2) 단 위안화 소매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억 위안 이상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된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영업지역 제한이 폐지되고, 신용카드 영업 및 컨설팅업 무도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외국은행 지점은 중국 개인에 대해 100만 위안 이상의 정기예금만 취급이 가능함.

※ 관련 법규: 「외자은행관리조례」(2006년 11월 개정), 「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2006년 11월 개정)

-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 지역제한 완화에서는 합의사항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2005년 12월에는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하얼빈, 창춘, 란저우, 은촨, 난닝 등 5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함(표 2 참고).

표 2. 은행업 관련 시장개방 이행상황

| 일 시 | 지점 설립 개방지역 | 위안화 업무 취급 대상 |
|-----------|-------------------------------|---------------|
| 가 입 전 | 상하이, 선전 | 외자기업 대상 시험 실시 |
| 2001년 12월 | 톈진, 다롄 | 외자기업 포함 |
| 2002년 12월 | 광저우, 주해, 칭다오, 난징, 우한 | |
| 2003년 12월 | 지난, 푸저우, 청두, 충칭 | 중국기업 포함 |
| 2004년 12월 | 쿤밍, 베이징, 샤먼, 선양, 시안 | |
| 2005년 12월 | 산터우, 닝보, 하얼빈, 창춘, 란저우, 은촨, 난닝 | |
| 2006년 12월 | 지역제한 폐지 | 중국 개인 포함 |

주: 선양과 시안은 예정일 (2005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개방하고, 하얼빈, 장춘, 란주, 은촨, 남녕에 대해서도 1년 앞당겨 개방함.

- 이외에 중국은 상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할 목적에서 외국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단 개별 투자자의 지분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계는 25% 이내로 제한됨).³⁾

※ 관련 법규: 해외금융기관에 의한 중국자본 금융기구에 대한 주식투자관리방법(2003년 12월 시행)

- 외국은행의 중국 진출과 중국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인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6월 말 현재 72개 외국은행이 중국내에 254개 영업기구(지점 등)를 설치하였으며, 40개국의 177개 은행이 240개 대표처(사무소)를 설립하였음. 2005년 말 현재 이 외국은행들의 자산총액은 876.6억 달러로 1995년 말(118.4억 달러)의 7.4배로 증가함.
 - 2005년 10월 말 현재 22개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계 17개 상업은행에 16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중국계 금융기관 자본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임.

3) 보험시장 개방

- 중국정부는 2003년 12월에는 외자 재산보험회사가 非생명보험(법정의무보험은 제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보험회사 설립지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보험중개서비스업에서의 외자지분 허용비율을 종전의 50%에서 51%로 상향조정하는 등

3) 중국정부는 상장된 금융기관의 외자비율이 25%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중국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만, 비상장 금융기관의 외자비율이 25%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외자금융기구로 인정함. WTO 秘書處 編著(2006), 「貿易政策審議 秘書處關於中華人民共和國報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p. 252.

WTO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관련법규: 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2002년 12월 11일 시행), 同 條例 실시세칙(2004년 6월 15일 시행),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WTO 가입 승낙 이행에 관한 공고(2004년 12월 11일 발표)

-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36개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에 진출하였음. 2005년 말 현재 중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자 보험회사는 41개 사로서 중국의 전체 보험회사(82개 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보험회사 영업기구(지점 등) 400여 개에 달함.

4) 정보통신시장 개방

- 2003년 12월에는 부가가치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2004년 12월에는 上海·廣州·北京 등 3개 도시에서 기초통신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관련 법규: 중국전신조례(2000년 9월 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임),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2002년 1월 시행)

- 중국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은 부진함.

- 중국신식산업부는 2005년 말까지 23건의 부가가치통신서비스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 중 8건에 대해 「외국인투자 통신서비스 경영 심사 의견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4건에 대해서만 통신서비스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음. (WTO 비서처)

- 중국신식산업부가 발급한 총 1만 5천여 건의 부가가치통신서비스 허가증 중에서 외자기업에 발급된 것은 10건에도 미치지 못함(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표 3. 통신분야 개방 계획

| 구 분 | | 주요 개방 계획 |
|----------|------|--|
| 基幹通信 서비스 | 지분제한 | • 가입 후 3년 이내 25%, 5년 이내 35%, 6년 이내 49% 허용 |
| | 지역제한 | • 가입 후 3년 이내 上海·廣州·北京 개방, 5년 이내 14개 도시 개방, 6년 이내 지리적 제한 철폐 |
| 移動通信 서비스 | 지분제한 | • 가입 즉시 25%, 1년 이내 35%, 3년 이내 49% 허용 |
| | 지역제한 | • 가입 즉시 上海·廣州·北京 개방, 1년 이내 14개 도시 개방, 5년 이내 지리적 제한 폐지 |
| 附加價值 서비스 | 지분제한 | • 가입 즉시 30% 이하, 1년 이내 49%, 2년 이내 50% 허용 |
| | 지역제한 | • 가입 즉시 上海·廣州·北京 개방, 1년 이내 14개 도시 개방, 2년 이내 지리적 제한 폐지 |

주: 14개 도시는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임.

다. 기타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

1)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 면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세관보호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WTO의 TRIPs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있음(표4 참고).

표 4. 중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개정 현황

| 법 규 | 주요 개정 내용 |
|--|---|
| 특허법(2001년 7월 1일) 동법 실시세칙(2002년 12월 2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실용신안·의장보호를 명기 •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판매를 신청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함. • 재판소의 심리종결권을 실용신안특허와 의장특허에도 부여 |
| 商標法(2001년 12월 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상표, 해외의 지리적 표시 등 인정 • 고의(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요건 삭제 |
| 著作權法(2001년 10월 27일) 동법 실시세칙(2002년 9월 1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저작물의 보호를 명시하고, 대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 • 인터넷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룸 |
| 기술수출입 관리조례(2001년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라이선스 계약 인정 |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2004년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에 대해 수입자가 담보금 제공 후 통관 |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2002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명시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개정 |
|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2005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침해시 ISP와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 |
| 지리적표시상품보호규정 (2005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외의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의 등록 및 보호 |
| 전시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2006년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전시회에서 특허·의장·상표·저작권 보호 명시 |

자료: 日本經濟産業省(2006), 『2006年不正貿易報告書』, 4月, pp. 98~100를 정리.

- 또한 중국정부는 지재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국가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가짜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강령(2006~2007년)」을 발표하기도 하였음(2006년 4월 26일).

-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인지도가 낮고,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건수는 2002년 6건에서 2003년 8건, 2004년 11건, 2005년 8건, 2006년 1~9월 중에는 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0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적발한 외국상표 도용·모방 건수는 6,770건으로 전년에 비해 23.2%가 증가함.

2) 무역관련 투자조치

- 중국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 기간 중 삼자기업(三資企業: 합자, 합작, 독자) 기본법을 수정하여 현지부품 사용시 우대조항, 외환수지 균형의무, 수출의무비율조항 등의 내수판매 제한조항을 삭제함.
 - ※ 삼자기업 기본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 그러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개발센터 설립 및 기술이전요구는 강화하고 있음.

3) 반덤핑조치 강화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피해조사국과 수출입공평무역국 등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함.
 - ※ 관련 법규: 반덤핑조례(2002년 1월 시행, 2004년 6월 개정) 및 반보조금조례(2002년 1월 시행), 산업피해조사공청규칙(2003년 1월 시행),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2003년 11월 시행)
- WTO 가입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반덤핑 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는 WTO 가입 이전에는 연평균 37건 수준이었으나, WTO 가입 이후에는 연평균 52건으로 증가하였음.
- 중국도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반덤핑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2006년 말 현재 중국이 제소한 126건 중에서 일본 24건, 한국 23건, 미국 20건, 대만 10건으로 이 4개국이 61%를 차지하고 있음.

3.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와 대외경제정책 변화

가.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

- 중국정부는 제1차 중국 무역정책검토회의⁴⁾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WTO 가입 이후 WTO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외무역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평가함.
 - 상품무역에서는 2006년 7월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합의사항을 100%로 이행하였으며, 무역업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무역업 대중화시대가 열림.
 - 중국정부는 2005년 이후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5년 말 현재 160여 개 서비스부문 중 104개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선진국 수준(평균 108개 부문 개방)의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가속화시키고,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1년 38.5%에서 2005년에는 64.1%로,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의존도는 20.1%에서 34.4%로, 수입의존도는 18.4%에서 29.8%로 높아짐.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단순평균관세율은 15.6%에서 10.1%로, 가중평균관세율은 9.0%에서 5.1%로, 실제관세율(관세수입액/수입액)은 4.2%에서 1.7%로 낮아짐.

표 5. 중국의 개방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연 도 | 무역개방도 | | | 관 세 율 | | |
|------|-------|-------|-------|-------|---------|-------|
| |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 명목관세율 | 가중평균관세율 | 실제관세율 |
| 2001 | 38.47 | 20.09 | 18.38 | 15.6 | 8.99 | 4.17 |
| 2002 | 42.70 | 22.39 | 20.30 | 12.0 | 7.55 | 2.88 |
| 2003 | 51.89 | 26.72 | 25.18 | 11.0 | 6.50 | 2.70 |
| 2004 | 59.76 | 30.71 | 29.04 | 10.4 | 5.87 | 2.24 |
| 2005 | 64.13 | 34.36 | 29.77 | 9.9 | 5.11 | 1.71 |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판, 中國海關統計 등으로부터 작성함.

-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금융, 유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통신분야 개방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표 6 참고).

4) WTO Trade Policy Review Body는 2006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차 중국의 무역정책검토회의를 개최하였음.

표 6. 주요 분야별 대외개방 실적 평가

| 분 야 | | 개 방 실 적 |
|-----------------|--|--|
| 상품 무역 | 무역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7월 무역업 등록제 실시, 개인에게도 허용 • 2005년 말 현재 무역기업 18만 개(2004~05년 6만 1,750개 신설) |
| | 관세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인하 목표 달성(평균 9.9%, 공산품 9.0%, 농산물 15.3%) • 2005년 1월 256개 IT 관련 제품 0세율 실시 • 2006년 7월 1일 자동차(10%) 및 자동차부품(25%) 관세인하 완료 • 완성차 특징 인증제도, 관세분류 등에 있어 문제점 존재 |
| | 비관세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식물유 수입쿼터 및 국영무역 관리 취소로 완전 이행 |
| 서비스 시장 개방 | 은행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월 중국 개인에 대한 위안화 영업 허용으로 이행 완료 • 2006년 6월 말 현재 72개 외국은행이 254개 영업기구 설립 |
| | 보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2월 지역제한 폐지 등 합의사항 대부분 이행 완료 • 2005년 말 현재 82개 보험회사 중 외자보험사 41개, 외자보험사 영업기구(지점 등) 400여 개 |
| | 증권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6월 말 현재 합자증권사 7개, 합자증권기금관리공사 23개, A주 거래 참여 가능 외자 증권영업기구 58개 사(상하이 39개 사, 선전 19개 사), 해외기구투자자 자격업체(QFII) 42개 사 |
| | 비은행금융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6월 말 현재 7개 자동차금융사, 3개 기업집단 재무공사, 신탁투자회사 진출 |
| | 상업·유통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2월 지역제한, 수량제한, 지분제한 폐지로 이행 완료 • 2005년 말 현재 외자 상업기업 1,341개 진출, 점포 수 5,657개 ※ 2005년에만 1,027개 기업 진출(외국인투자액: 18.16억 달러), 1,660개 점포 신설 • 2005년 외자 대형 유통체인점의 시장점유율 25%(일부 대도시 50%) |
| | 통신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이행 완료 예정(현재 전신법 수정 추진 중) • 2005년 말까지 중국 신식산업부에 신청된 외자기업의 부가가치통신 사업 신청(23건) 중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것은 4건에 불과 |
| | 기타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기구 195개 • 외자 회계사무소 7개 기업 영업 중(영업기구 18개 중 10개는 최근 4년간 허가 획득) • 합자·합작 병원 52개, 합작 학습기구: 851개 • 합자 여행사 11개, 100% 외자 여행사 7개 |
| 지식재산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 수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 미흡 | |
| 무역관련 투자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Contents 요구, 수출의무, 외환수지균형의무 폐지(2001년) ※ 자동차부품 현지화 요구, R&D센터 설립 및 기술이전요구 강화 • 선별적 외국인투자정책: 하이테크,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우대 • 연평균 외국인투자: (1997~2001년)433억 달러 → (2002~05년)598억 달러 | |
| 투명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2005년 중 전인대(全人大)이 20건의 무역 관련 법규 제정·수정, 무원이 무역관련 행정법규 47건 제정·수정 • 2000년 말 이전 공포된 756건 행정법규 정리(2001년) • 행정허가법 제정(2003년) | |
| 반덤핑, Safe Gua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섬유, 신발, 철강 등으로 확산 • 중국의 반덤핑 제소건수: WTO 가입 이후 106건(1995~2006년 6월 까지 총 126건) • 중국의 반덤핑 피소건수: WTO 가입 이후 240건(同 총 500건) | |

자료: 中國世界貿易組織研究會 사이트(www.chinawto.org.cn)

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균형 발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조화, 시장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 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의 지속적 확대로 통상압력과 위안화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의 과잉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저부가가치·환경오염·자원다소비형 수출에 대한 규제, 통상마찰 가능 분야의 수출 규제 등 선별적인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음.⁵⁾
 -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multi-currency basket system)를 도입한 후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허용하고, 환율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시장화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 중임.
-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정책에서는 과도한 외국인투자 의존적 경제구조를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렛대(leverage) 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양보다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외자이용 11·5계획」을 발표함(2006년 11월 9일).
 - 중국정부가 외자도입정책에 대해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중서부 개발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천명함.
-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석유 등 자원 확보, 첨단기술 획득,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 및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2004년에는 중국 상무부가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67개 국가별로 투자 또는 인수장려산업들을 제시함.

5) 중국의 수출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의 세계경제』, 제06-39호(2006년 11월 29일) 참고.

-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대외협력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홍콩, 마카오, ASEAN에 이어 GCC, 인도, 칠레, 뉴질랜드, 호주 등 주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APEC 가입(1991년), 상하이협력조직(SCO, 2001년 6월), 방콕협정 가입(2001년 5월) 등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아프리카포럼 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함.

4. 시사점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였으나,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변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리스크도 증대되고 중국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1년 12.1%에서 2006년 1~9월에는 21.3%로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투자 잔액 기준)은 2001년 말 현재 15.7%에서 2006년 9월 말 현재 24.6%로 높아짐.
-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대 축소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6%가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중국의 수출정책 변화는 가공무역에 기반을 둔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6%가 중국내의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의 82%가 중간재임(2005년 기준).
- 중국의 내수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 맞추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조업에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유통, 물류, 금융,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 즉 중국이 취약한 핵심부품과 첨단소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긴요함.
- 한·중 FTA, 전자무역 활성화 등을 중국과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수출시장과 투자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대중국 수출과 투자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